

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이유



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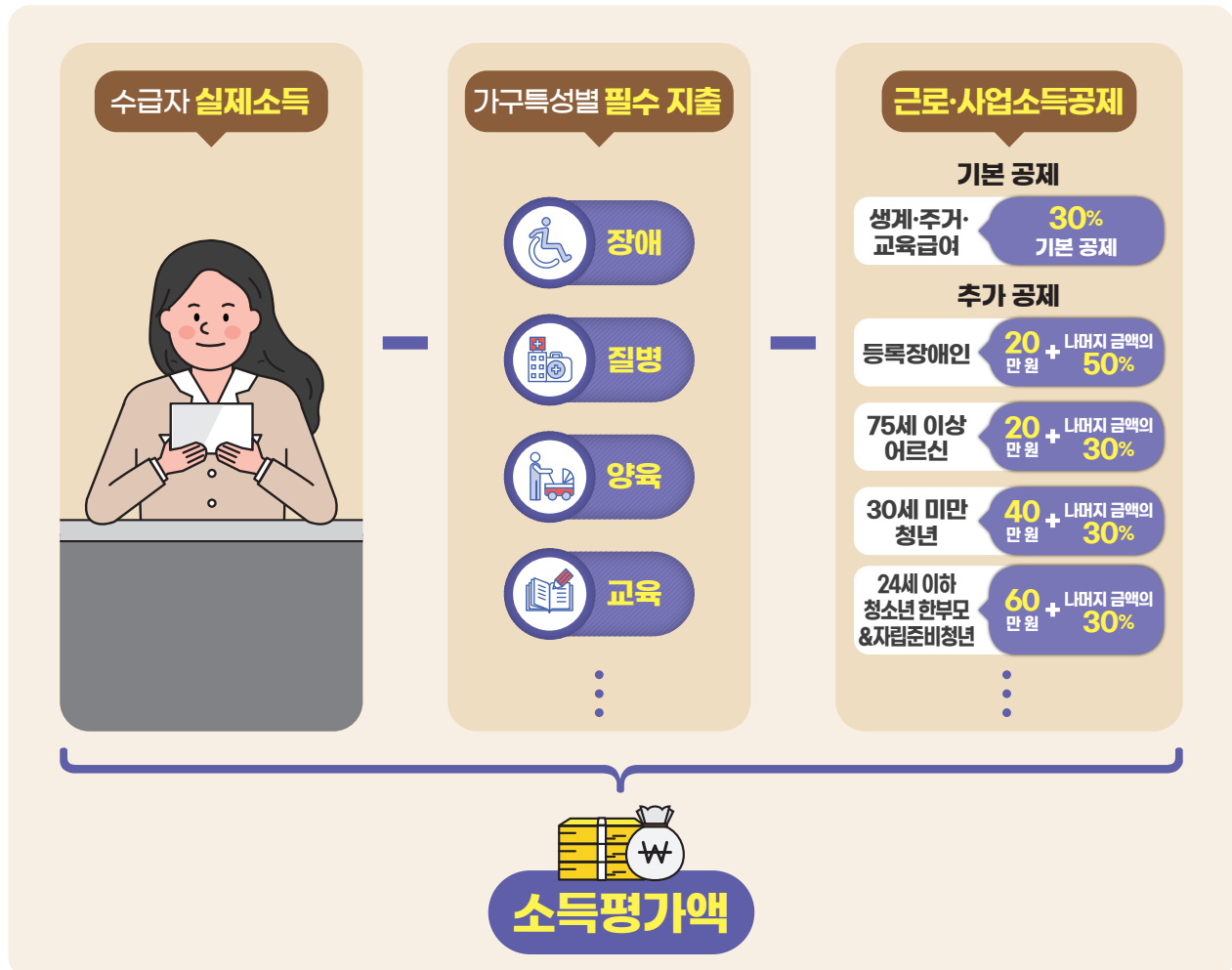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비용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소중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제도인 만큼 정말 필요한 분들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조사해 이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은 월급 등 매달 버는 금액을 그대로 산정하는 게 아닌데요.

먼저 수급자의 실제 소득에서 장애, 질병, 양육, 교육 등 가구 특성별 필수 지출 비용 및 근로·사업소득을 공제한 ‘소득 평가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재산의 종류별로 활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고 이 둘을 합친 금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수급자의 생활비와 경제 상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text{소득인정액} = \text{소득평가액}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 (\text{재산} - \text{기본재산액} - \text{부채}) \times \text{소득환산율}$$

$$= \text{실제소득} - \text{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text{근로·사업소득공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2000년 무렵만 해도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여겨 별도 재산 항목으로 두고 소득환산율도 100% 모두 반영했는데요. 하지만 국민 2인당 1대 꼴로 차량을 보유할 정도로 이젠 생필품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이러한 그간의 사회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는 생계·의료급여의 경우 자동차가 16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미만이거나 자동차 가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100% 소득으로 환산했는데요.

그러나 내년부터 가구원이 6명 이상이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라면 2500cc 미만이면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자동차 가격(자동차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 1대는 월 4.17%로 인하된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이 4.17%는 일반재산에 적용되는 소득환산율입니다.

예시

2024년 5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214만 원**



이전에는

자동차재산이 소득으로 100% 산정돼 월 소득인정액이 **679만 원**이 되어
생계급여 수급가구에서 탈락

180만 원	+	499만 원	=	679만 원
월 소득평가액		자동차가액 100% 산정		월 소득인정액

2024년 이후에는

다인·다자녀 수급 가구는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약 214만 원** (5인 가구 기준) 이하이므로
생계급여 수급!!

180만 원	+	약 21만 원	=	201만 원
월 소득평가액		일반재산 환산율 4.17% 산정		월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214만 원 이하

생업용 승용차는 이전에는 1600cc 미만인 경우 자동차 가격(자동차가액)의 50%를 소득으로 환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0cc미만인 경우 소득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소득 환산은 기초생활급여 등 복지 서비스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돕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소득 환산을 통해 가구의 실제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그에 따라 복지 서비스와 지원액을 조절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소득을 환산해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